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
- 전자우편 : jgkim25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60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(전화 : 044-201-4907, 044-201-4909 팩스 : 044-201-560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552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4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수엔테크(최상혁), ② (주)한진중공업(이병모),
③ (주)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(임종선)

나. 전화번호 : ① 02-2093-3485 ② 02-450-8758 ③ 02-3298-2600

2. 명칭 :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과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수자원 /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

<기술의 요지>

신청기술은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갖는 빗물저류조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, ① 다공성인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

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, 좌우 방향, 상하 방향에 대해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저류조, 그리고
 ② 지붕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, 침전분리부,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
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고, 지상과 연결되는 점검통로가 형성된 점검구형 전처
 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임

<범위>

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, 좌우 방향, 상하 방
 향에 대해 조립한 빗물저류조와, 지붕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, 침전분리부, 미세여
 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로
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
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20-812호

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
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23일

해양수산부장관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·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
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('20.2.18 공포, '20.8.18 시행)됨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세부 과
 태료를 규정하는 한편, 마리나항만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
 한 안전점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규정 (안 별표2)

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출항·입항 기록관리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
 액 등 세부 내역 규정